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추가 〉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12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추가	2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20일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체계와 다르게 회원제 수수료 등 별도의 요금을 신설하여 받는 등 실질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구인자가 해당 규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구인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구인자가 부당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제2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추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19조제6항제2호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 ⑤ (생략)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2의2. 제3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u> <u>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u> <u>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u> <u>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u> <u>내용을 구직자에게 고지할 것</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¹⁾,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라고 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²⁾.

또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가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구인자의 사업이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그 허가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1)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표】 2020~2024년 결정·고시 요금 외의 금품 수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건)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건 수	1	0	1	2	0

그런데 일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에 비자 발급 수수료 명목의 계약금을 받는 사례³⁾ 등이 나타나고 있어 구직자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정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하여금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요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직자에게 고지하여, 구직자가 법정 요금 외의 금품을 지급하는 사례나 요금 및 수수료 지급 여부를 둘러싼 오해·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개정안이 고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집행 시 현장에서 고지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지 방법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 가령 구두로 고지한 경우 당사자만이 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6874, 2022.08.30.

청구인은 2021년부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며 구직자로부터 20만원을 비자 발급 실비로 받았다고 주장함.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금액이 근로계약 체결 전 미리 받은 소개요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반한 이유로 15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림. 청구인은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후에만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므로 고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문 의 처

02)6788-5538
